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22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강동경, 정두리

변 론 종 결 2021. 3. 16.

판 결 선 고 2021. 4. 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5.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6. 1. 접수 제49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9781, 2017가소23602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각 전소판결’이라 한다)에 기하여 합계 5,00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4.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사건 원고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망인은 2018. 5. 2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오빠인 피고에게 2018. 6.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00/10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2711, 2016나10200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상환채권 3,030,280원(이하 ‘이 사건 망인 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2019. 7. 31.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라76, 대법원 2019마243). 라. 망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망인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이 사건 원고 채권에 해당하는 채무 6,551,096원(= 5,000,000원 + 2018. 5. 28.까지 이자 1,551,096원) 및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 768,650원이 있었다.

마. 망인은 2018. 7. 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망인의 부모 역시 사망하여 그 형제인 원고와 피고, D, E 4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6, 22 내지 24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전소판결은 망인이 알콜의존증에 의한 지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던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효이고, 망인의 사망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알았을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어 선의이다. 또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중 1/4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됨으로써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망인 채권으로 상계하면 1,008,070원이 추가로 소멸된다.

다. 판단

(1) 제척기간 및 이 사건 각 전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다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전소가 진행될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망인 채권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원고 채권 및 망인의 휴대폰 미납요금 채무액의 합계가 망인의 위 채권액을 초과하여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망인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에 비추어 형제인 피고가 망인의 경제사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혼동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의 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원고의 법정지분인 1/4 지분 한도 내에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다만, 위 일부 채권 소멸과 앞서 본 사해행위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 역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피고의 법정 지분인 1/4 지분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망인 채권으로 이 사건 원고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망인 채권에 대한 확정일이 2019. 7. 31.로 위 채권으로 상계를 하더라도 상계적상일은 2019. 7. 31.이므로 위 상계 역시 사해행위 판단 여부와는 무관하며, 앞서 본 혼동 및 상계로 인한 원고 채권의 일부 소멸을 고려하더라도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대 126.6㎡

중

갑구 9번 1000분의 100 지분 전부